

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[별지 제46호서식] <개정 2021. 12. 16.>

제 호

## 완성검사 증명서

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	상호(건축물 명)		대표자 성명	
	소재지			
가스시설시공업자	상호(명칭)			
	등록번호		대표자 성명	
	소재지	(전화번호: )		
완성검사자	검사원 성명		검사 연월일	
	차기 검사일	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
제71조제1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사용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제1항 · 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, 연소기, 가스설비,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에 의한 적법시공이 요구되며, 사용자께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시공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.
공급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0조에 따라 공급자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검사자	이 검사증명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 당시의 기준에 근거하여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

검사기관 주소:

담당부서:

전화번호:

년 월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직인